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최치호

- 작성 배경
- 성과귀속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성과활용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성과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결어



# [ 발간사 ]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실태를 살펴보면 기술흡수형국가로서 국제협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위스경영개발원(IMD)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국제협력수준은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R&D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구적 차원의 공동문제에 적극적인 정책대응의 결과, 최근 2~3년간 국제협력연구비가 전체 국가연구개발비의 6.7%를 차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져 가는데 비하여 법제도측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과 국제협력의 성과는 기대이상이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이 관련 법지식이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어려운 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이슈페이퍼는 국제공동연구 추진시 가장 핵심적이면서 쟁점이 되는 연구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이슈와 대응방안을 법제도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였다. 모쪼록 본 연구결과가 국제공동연구사업 시행에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정밀한 특허정책을 수립하는 선진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연구가 촉발되고 나아가 정부차원의 제도마련에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5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조영화

ISSUE PAPER 2008-0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kistep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1. 작성 배경 / 5
2. 성과귀속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9
3. 성과활용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17
4. 성과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28
5. 결어 / 32



# 1 작성 배경

▶ 최근 들어 C&D(Connect & Development) 또는 A&D(Aquisition & Development) 등 국경없는 개방형 연구개발(Open Innovation)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국제공동연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sup>1)</sup>.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과학기술기본계획<sup>2)</sup>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국제공동연구의 비중과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법제는 연구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의 귀속,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위임규정에 일임하고 있음<sup>3)</sup>

- 위임규정인 국제과학기술협력협정(대통령령)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조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sup>4)</sup>

1) 2005년도 국제공동연구는 74개사업, 230개 과제에서 37개국 319개 기관을 상대로 총 384건이 수행됨. 2006년도 국제공동연구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총 연구비가 5,871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6.7%와 총 과제수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90개 사업, 851개 과제에서 67개국 1,0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888건이 수행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07.8. 26면 이하 참조).

2) 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부문 60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형 과학기술 개방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정하고 국제협력투자 비중 연차적 확대, 해외R&D거점 확대와 전략적 공동 연구 강화, 과학기술 국제화 예산 확충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세부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3) 윤종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슈페이퍼08-01, 08.1, 56면.

4)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행 법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제과학기술협력협정(대통령령)에서 상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협약체결방법, 협약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공동연구관리규정에서는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 결국 국제공동연구의 성과인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 실정
- ◎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협약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에 맡겨 임의적으로 결정<sup>5)</sup> 하도록 하는 현재 방법론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고하여야 할 것임
- 범부처에 적용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연구성과의 공개와 귀속 및 활용, 기술료, 연구비 정산 등에 있어서 global standard에 부합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은 외국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호혜주의 원칙을 따르는 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EU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국내 R&D수행 및 실시원칙, 역외기업에 대한 실시·양도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우리도 연구성과가 최소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공동연구는 국제계약인 동시에 연구계약이므로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며, 지적재산권법, 기술이전규제법, 독점금지법, 계약법, 섭외사법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요구됨**

- ◎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으며, 더욱이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이 매우 부족하여 거의 전적으로 해외기관의 표준계약서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sup>6)</sup>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인 경우,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 소유원칙의 예외로서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선택조항을 두고 있음(제15조제3항)

5) 윤권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의 소유규정 현황 및 개선방안",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활용방안」,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제26회 JURIS FORUM 자료집, 2007.12.6, 5면.

6) 개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며, 동일한 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조차 지적재산권의

- 국제기술협력시 애로사항으로 분쟁발생시 대처(41.3%), 대상국가의 법률·행정적인 문제(36.4%), 대상기관의 접촉방법·경로확보(35.3%) 등으로 조사 ('06년 산업기술재단)된 바, 법적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함
- 따라서 EU의 Framework Programme에서 제공하는 지재권의 가이드라인 ("Guide to IPR for FP7 project")과 같은 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영국의 Lambert Model Agreements<sup>7)</sup>와 같이 검증된 유형별 표준협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함
- ◎ 국제공동연구는 국가 간 법률·제도, 문화, 관습 등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연구성과를 소유 또는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발명자에 오류가 있을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 또한 수출관리규칙(EAR: 15CFR 730~774)에 의하여 관리대상 기술에 해당하면 연구성과를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미국에서 발생한 발명은 미국에 우선 출원하여야 하며, 미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출원 시 미 특허상표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특허법 제184조 (제1국 출원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인재의 이동빈도가 높아 특허권의 소유관계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요구됨

소유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일례로 한-영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한 기관의 경우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국내기관은 사업결과물의 로열티만을 수취하는 경우와 정반대로 동 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실시권은 영국 기관이 가진 경우도 있음(윤권순·이승현외,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있어서 지재권 관리의 현행 분석 및 전략, 산업자원부, 2005. 21면).

- 7)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대학과 기업에게 공동연구계약에 들어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키고, best practice의 사례들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재권의 귀속과 실시권의 내용 및 학술적 공개의 가부를 조합하여 5가지 유형의 모범 계약서로 구성됨. 모범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실제 협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어떤 모범계약서를 선택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체크박스 형태로 제공됨

▶ 본고는 이러한 실정 하에서 국제공동연구계약 시 가장 핵심적 쟁점이 되는 연구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대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한편 주요국의 법적 접근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입법론적인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램

- ◎ 연구성과의 귀속과 관련하여 직무발명의 소유권자 및 발명자 인정요건의 차이, 기재오류 시 특허권의 무효여부,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어떤 형태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이로 일방이 특허출원을 거부할 경우의 출원가부에 대한 국가간 차이 등이 주요 이슈임
- ◎ 연구성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국가간의 특허공유의 법적 차이, 독점 금지법의 규제, 연구성과의 공개에 대한 법적 처리(특허요건인 신규성 상실의 규제여부), 기술이전 규제 및 외국출원에 대한 법적 제한, 리서치툴 사용 시 특허침해범위의 광협(廣狹) 등이 주요 이슈임

〈표 1〉 국제공동연구 협상 시 주요 쟁점 사항

구분	쟁점사항	
계약당사자간 이해의 조정	연구성과의 귀속	- 연구성과의 정의 - 연구성과의 귀속기준(발생주의/공헌도주의)/지분처분 금지 ※ 유의사항 : 국가별로 공유의 법률관계, 직무발명의 귀속 주체에 차이가 있음
	연구성과의 실시	- 기업간 : 이익의 공정배분의 문제 ※ 공헌정도(공유지분)와 실시에 따른 이익의 불일치 문제 -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간 : 불실시에 대한 보상문제
	개량기술의 처리	- 공동소유 여부, 공유 시 본 계약 적용여부 - 단독명의 시 상대방에 대한 실시권 허여 여부 등
	특허비 등의 부담	- 부담 주체 및 부담비율
연구성과의 보호	특허권 또는 노하우	- 공유자 중 특허출원을 반대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 곤란(한국) - 기술·노하우(기 보유/공동연구발생)의 비밀유지/타목적 사용 금지에 대한 우려
	학회 등 발표 여부	- 기업과 대학교수의 입장 차이
	동일 주제의 연구제한	- 제3자와 동일/유사목적(주제)의 공동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금지

## 2 성과귀속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1.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1) 주요 이슈

▶ **법제도상 직무발명인 연구성과물을 발명자인 직원이 원시적으로 소유하는 국가(발명자주의)와 기관이 소유하는 국가(사용자주의)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무상 처리에도 차이가 있음**

- 영국(특허법 제39조제1항), 프랑스(지적재산권법 제611조제7항제1호), 룩셈부르크 특허법 제13조제1항)의 경우 직무발명은 사용자(기관)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므로 승계조치가 필요없음
-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므로 직무발명규정 등을 통하여 기관에 예약승계하는 것이 필요함
- 캐나다 대학의 경우 실무상 “발명자 권익보호 또는 발명자 인센티브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학이 아닌 대학교수가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므로 유의하여야 함<sup>8)</sup>

8) 캐나다 대학의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대학본부가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학교수가 자율적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대학과 권리를 배분하지 않아도 됨. 민간수탁연구의 경우에도 지재권은 대학교수가 소유하고 기업은 실시권만을 가지며 통상 업계관행에 따른 기술료를 지불함.(Scott Inwood, "Collaborative R&D:Inventor Ownership and Industry Commercial Rights", presented at International Patent Licensing Seminar, Jan.24-26,200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지재권 소유의 Global Standard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05.8.31-32면에서 재인용.

〈표2〉 각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표

국가명	귀속주체	승계	보상
미국	특허법§101 발명은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	종업원의 사용자에 대한 승계는 계약에 의함	종업원과 사용자의 계약에 기초함
일본	특허법§35① 직무발명은 종업원에게 원시귀속. 사용자는 통상 실시권 보유	특허법§35③ 계약, 근무규칙 기타의 규정에 의함	특허법§35③ 사용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상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보유
영국	특허법§39① 직무발명은 사용자에게 원시귀속	승계 불필요	특허법§40① 사용자에게 현저한 이익을 준 경우에 종업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 또는 특허청장관은 보상금 재정보 가능
프랑스	지적재산권법§611⑦(1) 직무발명은 사용자에게 원시귀속	승계 불필요	지적재산권법§611⑦(1) 직무발명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권리 보유. 추가보상은 단체 협약, 사내합의, 개별 고용 계약에 의해 정해짐
독일	특허법§6 발명은 발명자에게 원시귀속	종업원발명법§6 사용자는 발명 보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청구를 하여야 함 종업원발명법§7① 무제한권리청구에 의해 직무 발명의 모든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됨 종업원발명법§7② 제한적 권리청구에 의해 사용 자는 통상실시권만을 취득	종업원발명법§9①,10① 사용자의 권리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보유 종업원발명법§9② 보상의 산정 시 직무발명의 경제적 이용성, 기업에서 종업원의 임무와 지위, 직무발명성립에 기업의 기여도가 중요
한국	특허법§35① 직무발명은 종업원에게 원시귀속. 사용자는 통상 실시권 보유	특허법§35③ 계약, 근무규칙 기타의 규정에 의함	특허법§35③ 사용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상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보유

## (2) 대응방안

- ▶ **계약에 따라 연구성과의 소유권(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예약)승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따라서 계약 전에 상대방에게 제도를 마련하게 하고, 성과발생 시 승계조치를 하도록 해야 함<sup>9)</sup>**
  - 독일기관에 대해서는 독일 종업원발명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무제한적인 청구를 할 것(청구이후에는 사용자만이 특허출원할 권리가 발생)과 청구 후 즉시 특허출원할 의무를 부과함
  - 각 당사자들은 소속 발명자에게 각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
  -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발명을 포기하기 전에 해당 발명자에게 발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서 종업원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함

## 2. 발명자의 결정

### (1) 주요 이슈

- ▶ **국가마다 발명자의 인정 및 법적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진정한 발명자가 누락되거나 발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포함되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음<sup>10)</sup>**

9) EU의 Framework Programme은 연구성과가 참가자의 재산이 되도록 참가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적절한 합의(권리양도 등)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임무는 특히 대학 참가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대학과 계약관계가 없는 학생, 방문교수 등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10) 발명자들은 물리적으로 함께 또는 동시에 연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일한 형태의 기여나 같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미국특허법제16조) 발명자의 결정은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실의 문제로서 특허법에서 가장 불투명한 영역이며 가장 어려운 문제영역으로 남아있음.(John J. Okully, "Resolution of Inventorship Disputes : Avoiding Litigation Through Early Evaluation", OHIO ST. J. ON DISP. RESOL. 918(2003), 김선정, 전계논문, 49면에서 재인용).

〈표 3〉 발명자 관련 한·미·일 특허법 비교

구분	한국/일본	미국
기재오류에 의한 특허무효여부	×	○
발명자의 인정	착상, 실시화의 양 측면에서 판정	- 착상에 공헌하는 것이 필요 - 실시화만은 불포함 - 착상의 제공, 착상의 구체화 양면에서 판정
발명자의 보정	출원이 계속 중일 경우에 가능	일정 조건하에 구제가능(사기적의도가 없다는 주장과 발명자 전원의 선언서 필요)

- 특히 공동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어 연구자가 도중에 전직하거나 다수의 법인과 유사주제의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가 혼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발명자의 인정에 유의해야 함

**▶ 미국의 경우 특허권침해에 대한 피고의 방어수단으로 발명자의 표시 오류를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의 항변<sup>11)</sup>으로 인정<sup>12)</sup>하고 있는 바, 발명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유념하여야 함**

- Ethicon Inc. 사건에서 원고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항변으로 피고는 따로 발명자가 있고 그 발명자로부터 소급하여 특허라이센스를 받았음을 주장함. CAFC(연방순회항고재판소)는 공동발명자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침해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제소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송을 기각함. 또 하나의 항변인 특허무효에 대하여 원고는 정정제도에 따라 누락된 발명자를 추가하여 특허유효성은 유지를 하였음(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45USPQ1545 CAFC 1998)

11) 특허청규칙 제56조에 따라 특허출원자는 출원 시 모든 잠재적인 심사자료를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정직의무'(Duty of Candor)가 있음. 미국 법원은 '불공정행위'이론(The Doctrine of Inequitable Conduct)에 따라 정직의무를 위반한 특허권자의 특허 강제성(Enforcement)을 부정함으로써 제56조의 정직의무를 관철하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항변의 종류는 크게 관련 선행기술자료의 미제출, 외국어로 된 참고자료의 설명부족 또는 번역본 미제출, 특허성과 관련한 사실의 잘못된 진술, 발명자의 잘못된 지정 등 4가지가 있음(한국전자산업진흥회, 국제특허분쟁 대응 표준 Manual, 2004.9.70-71면).

12) PerSeptive Biosystems, Inc. v. Pharmacia Biotech, Inc. 사건을 참조하기 바람.

- 또한 퇴직자가 前 직장의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사례(Checkpoint Systems Inc. v. All-Tag Security SA CAFC No.04-1395)도 빈발함

## (2) 대응방안

- ▶ 정기적으로 진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발명 발생 시마다 참여연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발명자여부에 대한 확인과 양도증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연구노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최대한 빨리 특허출원을 함
- 대학의 경우, 발명자인 조교나 대학원생이 제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미국 특허권을 의도한 경우에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

## 3. 연구성과의 귀속기준

### (1) 주요 이슈

#### ▶ 연구성과의 정의

- 연구성과는 성과 유형(산업재산권, 저작권 등)과 범위에 대한 정의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목적과 직접 관련유무 및 목표 기술수준 달성유무에 따라 결정됨
  - 그 범위를 한정(영역 I)할 경우에 범위 밖(영역 II, III, IV)의 성과는 발명기관에 전적으로 귀속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큰 이해관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성과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성과에 대한 정의를 함

〈표4〉 연구성과 분류 기준

성과		공동연구 목적과 직접관계 유무	
		있음 (A)	없음
목표 기술 수준	달성 (B)	I	III
	미달성	II	IV

### ▶ 연구성과의 귀속기준

- 성과의 귀속뿐만 아니라 실시규정 및 특허비 부담, 비밀유지의무, 성과 발표의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의해서 기준을 결정함
  - 발생주의(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에 귀속)나 분야별주의(의도하는 분야의 당사자에게 귀속)를 선택할 경우에 성과가 상대방에게 귀속되어 성과를 실시하는데 별도의 기술료를 지불할 수 있음
  - 발생주의나 분야별주의에 따라 쌍방에게 귀속된 성과를 특허출원할 경우에 상대방의 특허 출원으로 인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세계주의 채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내용 및 출원시기를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헌도주의(발명의 착상 및 구체화의 기여도, 보유기술의 적용정도, 연구자원의 투입정도 등에 따라 귀속)를 선택할 경우 무형적인 기여도 등 지분비율의 산정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관계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됨

### ▶ 연구비 재원 출처 및 국가R&D사업 제도 확인

- 공동연구 상대기관이 투입하는 연구비의 출처가 공적 자금인 경우에 연구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일정한 제한이 부가될 수 있고 그러한 제한은 강행 규정이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 자금지원 R&D경우에 연구개발활동은 자국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부품·재료 등의 수급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영토 밖에서의 연구개발이 인정됨

- 또한 취득된 지적재산권은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결과 미국 내 연구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도 자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기술사업화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하여(March-in Right)할 수 있으며, 중요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외국으로 지재권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함

〈표 5〉 주요 선진국의 국가R&D사업에 있어서 성과귀속과 활용제도 비교

주요 사항	미국	일본	EU
R&D 참여 자격	-시민권자가 51%이상 지분 보유한 미국내 법인 -외국기관참여는 미국경제 기여가능성과 호혜주의 적용	-일본내 연구개발거점 보유 기관(국적제한없음) -해외시설/R&D역량 활용 필요시 외국기업과 공동 참여 가능	-EU내 법인(국적제한 없음) -EU외 국가와 협약에 의한 국제공동연구
R&D 활동 지역	-자국내 R&D수행 원칙 -연구시설/재료확보를 위한 해외수행 예외적 허용	-자국내 R&D수행 원칙 -연구시설/재료/ R&D능력 등 해외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해외수행가능	-EU지역내에서 R&D 수행
R&D 성과 소유	미국내 법인이 지재권소유 (산학연/기업규모 관계없음)	-주관연구기관(필요 시 정부는 공동소유 가능)	-연구개발자소유원칙 -참여기관의 성과 배분은 공동연구기관간 협약에 따름
정부권리	-무상 통상 실시권 (재실시 불가능) -공공목적 또는 이유없는 미활용기술에 대한 강제 실시권(적정대가 지불)	-무상 통상 실시권 (재실시 불가능) -공공목적 또는 이유없는 미 활용기술에 대한 강제 실시권(적정대가 지불)	-EU역외 기업에 대한 기술실시,양도제한 가능
연구개발자 의무	-모든 발명 신고 -지재권확보여부 보고 -지재권양도, 실시상황보고 -미국내 기술실시	-모든 발명 신고 -지재권확보여부 보고 -지재권실시상황보고 -일본내 기술실시	-연구개발성과 보고 -지재권확보, 실시, 양도 등 보고 -EU지역내 기술실시

## (2) 대응방안

▶ **해외기관의 지적재산정책(Intellectual Property Policy)은 매우 엄격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상대기관의 지적재산정책<sup>13)</sup>을 검토하고 협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재권소유 및 활용에 대한 법령까지 검토해야 함**

- ◎ 성과귀속기준에 대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발생주의 보다는 공헌도주의를 선택하여 공동연구로 발생하는 발명은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 부득이하게 발생주의를 택할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한 무상의 비독점 실시권과 특허출원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무상의 권리확보를 함
  -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유·무상으로 양도받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기 전에 우대 조건으로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선택권(First Refusal Right)을 규정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함
  - 특허출원 중 또는 특허권 획득 후 포기할 경우에 발생한 특허비용과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할 의무를 상호 부과함
  - 위의 경우에 상대방이 인수를 원하지 않으면 적시에 종업원발명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발명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여야 함. 만일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함<sup>14)</sup>
  - 특허출원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이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시기적 제한규정을 설정함

13) 미국 주요 대학의 지적재산정책(Intellectual Property Policy)에 대하여는 부록의 표를 참조하기 바람.

14) 파켄베르크외, 표준 라이선스계약, 법영사, 2005.2, 495면

### 3 성과활용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1. 연구성과의 공유에 대한 법률관계

##### (1) 주요 이슈

▶ 연구성과인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자기 지분에 대한 처분이나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 등에 대하여 각국의 특허법 상 여러 제한이 있음

● 반대로 미국 특허권은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 할 수 있으므로 금지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일방적인 공유자의 지분양도에 의하여 타 공유자의 지분에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가치의 저하를 방지하거나 (잠재적) 경쟁기업에게 지분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처분 금지규정을 마련함

▶ 연구성과를 일방 당사자만이 실시할 경우에 기술료의 발생여부 및 해당 금액을 사전에 규정해 두지 않으면 기술료를 받을 수 없음

● 미국 특허권은 특약이 없으면 제3자로부터 수취한 기술료를 상대방 공유자에게 배분할 의무가 없으므로 분배가 필요한 경우 명시적으로 규정함

##### (2) 대응방안

▶ 연구성과물인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국의 특허법은 성과활용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한의 배제여부를 특약으로 결정하고, 상대방이 수취한 기술료의 배분여부도 규정함

▶ 연구성과의 실시에 상대방의 선행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실시권(유·무상여부 및 기간까지 포함)을 확보하여야 함

- 상대방 소유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기로 정한 경우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중립적 제3국의 신뢰가능한 기관에 임치(任置, escrow)하여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

〈표 6〉 주요 국가의 특허권 공유 관련 법률관계

국가명	자기실시	지분양도/실시허락 등	침해소송 제기
미국	별도 규정 없으면 타공유자동의 불필요 (특허법§262)	-비독점 실시권 설정, 지분 양도에는 타 공유자 동의 불필요 -독점 실시권설정, 특허전체 양도는 타특허권자 동의필요(특허법§261)	타 공유자의 동의 필요
일본 (한국)	별도 규정 없으면 타공유자 동의 불필요 (특허법§73②)	실시허락, 지분양도, 질권 설정에 타공유자 동의필요 (특허법§73①②)	-보존행위로서 각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 있음
영국	반대합의 없으면 타공유자 동의 불필요 (특허법§36②)	실시허락, 지분양도, 양도저당 설정에 타공유자 동의필요 (특허법§36③(b))	타 공유자의 동의 불필요 (특허법§66②)
프랑스	-별도 규정 없으면 타공유자 동의 불필요 -단, 불실시특허권자에 보상금지불조건으로 실시 가능 (지재법§613)	-실시허락, 지분양도에 타공유자 동의필요 -단, 실시허락은 타공유자에게 지분 양도신청한 후, (지분양도 없는 경우) 불실시공유자에 보상금 지불조건으로 가능 -독점실시권허락은 전체특허권자 동의 또는 법원허가 필요 -지분양도에 타공유자에게 先買權 있음 (지재법§613)	별도 정함없으면 타 공유자의 동의 불필요 (지재법§613)
독일	별도 규정 없으면 타 공유자동의 불필요 (민법§743-745)	-실시허락에 타공유자 동의 필요 -지분양도, 질권설정등에 타 공유자 동의 불필요 (특허법§743-745, 717,719)	별도 정함없으면 타 공유자의 동의 불필요 (지재법§613)

〈표 7〉 주요 국가의 특허공동출원 등에 동의요건 비교

국가명	단독출원 가부	단독 지분 양도 가부	특허청의 통지처	출원단독포기·취하 가부	단독심판/소송절차 가부
미국	-원칙적으로 불가 -일방이 거부, 상당한 노력에도 발견 또는 연락할 수없는 경우 단독출원가능 (특허법§116)	可能 (특허법§261)	요구에 의해 1인에게 통지가능 (특허법§132)	不可 (특허규칙§1.33)	지정되면 가능
일본	不可 (특허법§38)	不可 (특허법§33③)	공동출원인중 1인 (특허법§14)	不可 (특허법§14)	不可 (특허법§132③)
영국	可能 (특허법§7①, §10)	不可 (특허법§36③)	지정없으면 공동출원인 전원 (특허법§10)	不可 (특허법§10)	不可 (특허법§10)
프랑스	不可 (지재법§612)	不可	공동출원인 1인을 선정	不可	可能
독일	可能 (민법§744)	可能	공동출원인 1인을 선정	不可 (민법§747)	可能 (민소법§62)

## 2. 연구성과 활용의 제한

### (1) 주요 이슈

#### 기술이전 규제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국외로 이전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전규제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연구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표 8〉 주요 국가의 기술이전 규제 제도 비교

국가명	기술이전 규제 관련 법령 및 내용
미국	- 규제대상기술 등을 미국적 보유자가 외국국적 보유자에게 개시한 경우, 외국국적 보유자의 모국에 수출로 간주하여 민사벌 및 형사벌에 의한 벌금(수출관리규칙)
일본	- 경제산업대신의 허가없이 비거주자에게 규제대상기술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가격의 5배 이상의 벌금(外國爲替法)
독일	- 외국무역관리령에서 규제된 기술 및 기술지원(구두, 전화, 전자적 형태를 포함)을 허가 없이 제공한 자에게 5년 이하 또는 50만 유로이하 벌금(외국무역관리법)
한국	- 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 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기술개발촉진법§13)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함(대외무역법§21) - 국가안보 등 국가적인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공동연구 관련 독점금지법상 규제

- ◎ 각국은 일반적으로 공동연구의 경쟁촉진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규제하고 있음<sup>15)</sup>
- 연구개발(특히 수평적)의 공동화에 의해 참가자간의 연구개발이 제한되어 기술 또는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사적 독점으로 규제함

15)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경쟁제한적 공동연구개발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19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경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19②).

- 그 판단기준으로는 참가자의 수, 시장점유율(특히 시장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의 필요), 연구의 성격, 공동화의 필요성, 대상범위·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감안하고 경쟁 촉진적 효과도 고려함
- 계약 및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항이 참가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제함
- 그 판단기준으로는 연구개발의 자유도 및 판매가격 결정의 자유도 확보여부, 불합리한 끼워 넣기에 의한 제한 부과 여부를 고려함

〈표 9〉 한국과 일본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제 사항<sup>16)</sup>

구분		불공정 행위 유형
공동연구의 실시제한	한국	-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연구개발 주제이외의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한 - 공동연구개발 시 이미 보유한 기술의 사용이나 제3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 제한
	일본	- 공동연구개발 주제 이외의 주제의 연구개발 제한 - 공동연구개발 주제와 동일한 주제의 연구개발을 공동연구 개발 종료 후 제한
공동연구성과인 기술의 사용제한	한국	- 공동연구개발 성과인 기술을 이용한 다른 연구개발의 제한 - 공동연구개발 성과인 기술의 개량기술 등을 다른 참여자에게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의무 부과
	일본	- 성과를 이용한 연구개발의 제한 - 성과의 개량발명 등을 타 참가자에게 양도의무 부과 또는 독점실시허락 의무 부과
연구성과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제한	한국	- 생산·판매지역이나 생산·판매수량 제한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방 제한 - 제품의 원재료와 부품구입처 제한, 제품·품질·규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제한 - 제품의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 제한
	일본	- 성과에 기초한 제품의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 제한

16)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제7조 및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共同研究開発に關する 獨占禁止法上の 指針」(1993.4.) 참조.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불공정행위유형을 위법 우려가 강한 黒조항, 위법의 우려가 있는 灰조항, 위법하지 않은 白조항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灰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성과에 기초한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지역·수량 제한, 성과에 기초한 제품의 판매처, 원료·부품의 구입처 제한 및 성과에 기초한 제품의 품질 또는 규격 제한을 예시하고 있음

- ◎ 미국의 경우 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독점금지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 Concerning Research Joint Ventures, 1980년)에서 공동연구 개발의 성과인 발명의 개별적 개발, 제조, 판매를 제한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과 경합하는 연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의 우려가 있음을 규정함<sup>17)</sup>
- ◎ EU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동연구개발계약은 연구개발일괄적용제외에 관한 EC위원회규칙(Commission Regulation(EEC) No.418/85 of 19 December 1984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85(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로마조약 제85조제1항(경쟁을 제한하는 협정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sup>18)</sup>시키고 있음<sup>19)</sup>
  - 계약자가 단독으로 혹은 제3자와 공동연구개발 계약 분야 이외의 분야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종료 후 공동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
  -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에 해당 계약의 성과인 제품 또는 제법에 관한 타 계약자의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공동연구개발계약 성과인 제품의 제조, 판매량 또는 제법의 사용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
  - 공동연구개발계약 성과인 제품의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의 제한, 고객제한, 적용제외기간(계약자가 공동시장 내에서 최초로 생산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을 초과하는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17) 국가공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1984년)은 공동연구개발의 독점금지법상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을 명시하였으며, 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고의무부과(締約後90일 이내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면신고(참가자, 형태, 목적)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Clayton Act 제4조에 의한 징벌적 배상(3배 손해배상)원칙을 배제하고 있음.

이외에 Joint Venture 일반에 대하여 합리의 원칙을 사용하여 분석한 법무성의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1988)도 참고하기 바람.

18) 금지되어 있는 사업자간 합의, 결정 협조 행위 중 제외행위로서 상품생산이나 유통구조 개선, 기술개발이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이러한 행위가 공동연구개발 참여자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관련 제품생산에 경쟁을 제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있음.

19) 中島憲三, 共同研究·開發の契約と實務, 民事法研究會, 2006.11, 122~127면.

- 공동이용계약이 아닌 경우에 공동연구개발 성과인 제품을 제3자에게 제조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법을 제3자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계약지역 내에서 재판매하는 판매업자나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거부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동시장내의 타 판매업자로부터 공동연구개발 성과인 제품을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 외국출원의 규제**

- 한국, 일본과 달리 미국 특허법은 미국 내에서 행해진 발명은 최초로 자국에 출원하여야 하며, 미국출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외에 출원하려면 특허상표청장의 허가가 필요함

〈표 11〉 주요 국가의 외국출원 제한 제도 비교

국가명	제1국출원 제한 및 국내출원의무 관련 법령 및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행해진 발명은 우선 국내에서 출원하여야 하며, 국내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상표청장의 허가가 필요</li> <li>- 국내에서 행해지 군사관련 발명 등에 대하여 국가 안전의 관점에서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외국출원이 규제됨. 이를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 (특허법§184)</li> </ul>
한국·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법에는 외국출원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은 없음</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에 저촉하는 경우, 연합왕국거주자는 외국출원을 하거나 국내출원일로부터 6주간 이내에 동일발명을 외국에 출원할 때에는 특허청 장관의 허가가 필요(특허법§23①)</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인이 프랑스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프랑스특허청에 출원할 의무 있음 (지적재산권법§614의 2)</li> <li>- 국방에 관한 발명은 몰수할 수 있음(지적재산권법§613의 2)</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무제한권리청구(종업원발명법§7①,③) 후 바로 국내출원을 할 의무가 있음. 무제한 권리청구 후 사용자가 국내출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출원할 수 있음</li> <li>-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무제한권리청구 후 외국출원을 할 권리를 가짐 (종업원발명법§14①)</li> </ul>

- ◎ 독일의 경우에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의 승계 후 지체없이 독일에 특허 출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업원 명의로 출원할 수 있으므로 독일기관과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는 독일에 우선적으로 출원 사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

## (2) 대응방안

- ▶ 공동연구 계약 시에 해당국가의 기술이전규제에 대한 법령을 따를 것과 기술이전규제를 승인받도록 보증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sup>20)</sup> 반드시 계약 전에 규제대상기술 여부를 확인함
- ▶ 외국에서 행해지는 공동연구개발은 원칙적으로 수행지역의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판단됨.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우리나라 또는 상대방 국가의 규제사항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활용함
- ▶ 국가에 따라서 제1국 출원 또는 국내출원의무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에 선출원한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그러한 제한이 없는 한국이나 일본에 출원하도록 출원사무를 규정함

20) 미국 M.I.T의 국제연구계약상 기술이전규제 관련 조항(정부승인 非보증)은 다음과 같음

「18. It is understood that M.I.T. is *subject to United States laws and regulations controlling the export of technical data, computer software, laboratory prototypes and other commodities*, and that its obligations hereunder are contingent on *compliance with applicable U.S. expor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s amended, and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The transfer of certain technical data and commodities may require a license from the cognizant agen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or written assurances by the Sponsor that the Sponsor will not re-export data or commodities to certain foreign countries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cognizant government agency. While M.I.T. agrees to cooperate in securing any license which the cognizant agency deem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M.I.T. cannot guarantee that such licenses will be granted.*

일본 전기통신대학의 국제공동연구계약서상 기술이전규제 관련 조항(정부승인 보증)은

「10.5. *Export Controls*, In transferring goods and technologies, each of the parties shall *observe th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and the country where Collaborator is located*. If required by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and the country where Collaborator is located, *each party shall obtain approval for export of goods and technologies* which are to be transferred for the purposes of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 4 성과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1. 연구성과의 보호

#### (1) 주요 이슈

##### ▶ 비밀보호·관리체계

- ◎ 비밀유출은 공동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있고, 특허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요건의 상실사유가 됨. 따라서 연구성과의 보호를 위하여 각국의 영업비밀 관련법과 판례의 보호요건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각국의 경우 노하우 등 영업비밀의 해당 요건 중의 하나로 ‘비밀유지성’을 들고 있는 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 문서·통신·시설·인원보안에 합리적인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한 연구성과가 특허출원을 통하여 공개될 경우에 계약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우려가 있음
-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경우에 연구개발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비율이 61.7%를 차지한다는 조사<sup>21)</sup>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밀유지체제가 불비하고 연구자의 비밀준수 마인드도 매우 취약한 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함<sup>22)</sup>

21) 한국과학재단·지식재산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실태조사, 2006.4.

22) 국내 업종별 산학공동연구개발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지적소유권 분쟁(10.2%)보다 높은 27.3%가 대학의 부실한 비밀보호관리체계를 들고 있음(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산학협력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2006),9면.

-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의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이하인 경우에 국가중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큼

### ▶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대한 사전 합의

- ◎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특허출원 등을 반대하여 영업 비밀로 보호하기로 주장하면 특허출원할 수 없는 국가(한국, 일본, 프랑스 등)가 있으므로 사전에 특허출원 등의 권리화를 위한 조항을 마련함
- ◎ 미국은 공동발명자 1인이 특허출원을 반대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다른 발명자는 제외된 발명자를 위하여 특허출원이 가능함(특허법§116②)

### ▶ 분쟁(不爭)의무<sup>23)</sup> 및 성과에 대한 보증(保證)

- ◎ 공동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선행연구결과(Background IPR)와 연구성과인 특허권의 효력을 직접 다투거나 제3자가 다투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분쟁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분쟁의무의 유효성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공동연구는 선행기술을 포함한 많은 정보가 상호교환되므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허를 공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성격상 상호 협력관계로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계약기간 동안 분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음

23) 계약대상 특허의 유효성 또는 노하우의 비밀성을 일체 다투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특허이의 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청구 행위, 제3자에게 특허의 공지자료를 제공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하거나 타인이 청구한 무효심판을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성과발표 등의 제한

- 성과를 발표하면 특허를 받지 못하거나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표여부, 발표 내용 및 시기, 게재할 학술지명, 발표자의 이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진도점검회의를 통하여 확인함
- 성과발표에 대한 제한은 전면 규제방법, 사전에 발표내용을 검토한 후 발표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발표 전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 발표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게 하는 방법, 발표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각국의 특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만 인정하고 유예기간안에 특허출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함<sup>24)</sup>

〈표 12〉 주요 국가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비교

국가명	신규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대상
미국	세계 공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제한 없음(특허법§102)
일본	세계 공지	출원일로부터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간행물발표</li> <li>- 장관지정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문서발표</li> <li>- 장관지정 박람회, 파리동맹국·WTO 가맹국의 국제박람회에 출품</li> <li>-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보유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특허법§30)</li> </ul>
영국	세계 공지	출원일로부터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람회 및 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예 :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발명의 개시) (특허법§2④)</li> </ul>
프랑스	세계 공지	출원일로부터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람회 및 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예 :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발명의 개시) (지적재산권법§611의13)</li> </ul>
독일	세계 공지	출원일로부터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람회 및 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예 :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발명의 개시) (특허법§3④)</li> </ul>

24) Lambert Model Agreements는 산학공동연구의 학술적 공개에 대하여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소정기간내에 비밀 통지를 받지 않으면 과제결과물을 세미나 또는 강의 등에서 논의할 수 있고, 기업의 Background기술이나 과제 결과물을 학술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모델과 학술적 공개권이 없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음(Lambert Agreement에 대해서는 '주31' 참조).

## (2) 대응방안

- ▶ 우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취약한 비밀관리체제로 인해 선진 기관이 연구 협력을 꺼리고 연구정보의 전달을 기피하거나 계약위반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global standard에 맞는 비밀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 공동연구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제공하는 정보, 연구결과물 등의 정확성·유용성·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며, 이러한 정보 등의 사용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면제함
  - 연구성과인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특허 비침해 보증이나 제조물책임에 근거한 청구권은 상호 포기함
  
- ▶ 성과발표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발표를 규제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단독소유하는 성과물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단독소유 성과에 대한 제외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발표금지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예정조항을 명문화하여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도록 함

## 2. 리서치 툴(research tool)<sup>25)</sup>의 사용

### (1) 주요 이슈

- ◎ 해외기업과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시 해당 국가에 특허된 제3자의 research tool을 사용할 경우에 비상업적인 시험·연구 목적의 특허실시에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 ◎ 영국 및 프랑스의 판례에 의하면 기업과의 제휴라 해도 대학연구에 특유한 진리탐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3자의 특허인 research tool을 사용한다고 해도 예외규정에 의하여 면책될 가능성이 있음
- ◎ 영국에서는 몬산토(Monsanto)사건에서 미지의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가설을 검증할 목적의 시험, 특정 조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다른 조건에서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목적의 시험은 「시험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해당한다고 봄
  - 반면에 (규제당국 등의) 제3자에 대하여 제품이 기능하는지의 여부를 실증하기 위한 시험은 「시험목적」을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Monsanto v. Stauffer, 1985, RPC515(CA))
  - 따라서 후발의약품이 출시된 제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은 단지 기지(既知)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어서 「시험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Auchincloss v. Agricultural and Veterinary Supplies, 1999, RPC397(CA))

25) 리서치 툴은 실험 수행에 유용한 합성물 또는 방법을 의미함. 세포주, 단일클론 항체, 시약, 동물 모델, 성장 인자, 조합 화학물(combinatorial chemistry), 유전체 및 프로테오믹 라이브러리(genomic and proteomic library), 약물, 약물 표적, 클론, 클로닝 도구, 방법, 실험기기와 기계,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등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포함하며, 진단 또는 치료 제품 또는 상업적 규모의 제조 공정과는 구별됨(한국지식재산연구원 R&D 특허센터, 「물질이전계약에 관한 연구」, 2007.11.55면)

- ◎ 프랑스에서는 시험이 발명의 기술적 특성의 확인이나 발명범위의 평가, 기술적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에 의하여 상업적 영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시험적 사용」의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Babolat v. Boschian & Redeye, in PIBD 1992)
  - 후발의약품의 제조신청과정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서 특허제품의 사용은 제조승인신청과 특허제품의 사용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이유에서 「시험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Science Union & Service v. Expanpharm, in PDPI 2002).
- ◎ 반면 일본과 미국은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므로 주의가 필요
  - 일본에서는 대학이 비상업목적의 연구에 특허발명을 사용한 경우라 해도 업(業)으로서의 실시(특허법§68)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sup>26)</sup>
  - 미국의 경우 시험적 사용의 예외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음. 판례에서 「시험적 사용」 예외의 법리는 오락이나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위해 또는 엄밀하게 철학적 진리탐구를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종전 법리가 재확인되고 있음<sup>27)</sup>
  - 다만, 후발의약품의 승인신청에 필요한 임상시험은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미국특허법§271(e)2)(Bolar조항)

## (2) 대응방안

- ▶ **특허된 제3자의 research tool을 연구에 사용할 경우에 비상업적인 시험 연구 목적의 특허실시에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의 적용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법제도와 판례를 확인하여야 함**
-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26) 染野啓子, “試験研究における 特許発明の實施”, AIPPI, Vol.33, No.3, 1988, 5면

27) Roche Products, Inc. v. Pharmaceutical Co., 733 F.2d 858 CAFC 1984 및 Embrex, Inc. v. Service Engineering Corp., 216 F3D 1343 CAFC 2000 등 참조

### 3. 제3자와 공동연구 등 제한 여부 확인

#### (1) 주요 이슈

▶ **비밀유출의 위험 및 연구성과와 관련한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주제에 대한 공동 및 위탁연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 계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초과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의 공동연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다만 연구기간 동안 동일주제에 대하여 제3자와 공동연구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함
- ◎ 연구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합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연구를 위탁할 수 없음

〈표 13〉 한국과 일본의 공동연구제한에 대한 독점금지법상 제한 비교

연구주제 \ 금지기간	연구기간 중의 금지	종료 후 합리적 기간 내의 금지
동일한 주제	가능	가능
매우 밀접한 주제(日)	가능	가능
다른 주제(韓)	위법 우려	위법 우려

#### (2) 대응방안

▶ **동일주제에 대하여 제3자와 연구를 제한하는 것은 상호 영향이 크므로 향후 기관의 연구개발 및 사업전략, 교환된 연구정보나 보유기술의 비밀성 또는 가치정도, 연구진의 보유역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함**

- ◎ 제한할 경우에도 연구주제와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여야 함. 또한 부득이 자기가 분담하는 연구범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5 결 어

▶ **국제공동연구는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이 없고, 협약서가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국가 간 법률, 문화, 관습 등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문제-특히 연구성과의 귀속과 활용-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간 양자협정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국제공동연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립하여 해외기관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협상력이나 기술력 등을 보완해 주어야할 것임

◎ 협약체결에는 각국의 지적재산권법, 기술이전규제 관련법, 독점금지법 등에 대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우리 실무자들의 지식과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해 주는 관련지침이나 매뉴얼 및 유형별 표준협약서를 제공하는 것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sup>28)</sup>

- 영국은 입법적 해결보다는 재무성홈페이지를 통해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시 각자의 지적재산권의 관리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표준 계약서를 제시함

- 이 "Lambert Agreements"는 개별 연구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각 연구주체들의 전략과 환경조건을 입력하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원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판단됨

28) Final Report, Lambert Review of Business-University Collaboration, Dec.2003, p.87., 김선정, "국가연구개발 사업자금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특허청, 2007.12., 20면에서 재인용

- ▶ **본고는 이러한 어려움 하에서 국제공동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주요 국가의 지적재산권법제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정리하였음**
  - ◎ 특히 연구성과의 귀속과 실시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 특허권공유·외국출원 및 기술이전에 대한 법적 규제·연구성과 공개 및 리서치 툴의 실시·제3자와 공동연구 제한 등과 관련한 주요 국가의 법제상의 차이 및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음
  
- ▶ **이상의 논점에 더하여 우리와 달리 외국의 경우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국내출원의무, 자국영토에서 지재권을 활용한 사업의 전개(예 : Buy America원칙), 역외기업에 대한 실시·양도제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유특허권의 관리, 처분, 활용이 가능한 국가도 있음**
  - ◎ 이와 같이 국가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적 태도가 상이한 바, 어느 법제가 보다 국가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지에 대하여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참고문헌

- 최치호·허상훈, 기술계약실무가이드, 파마코리아나사, 2001.6.
-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譯, 지적재산전략교본, 파마코리아나사, 2007.7.
- 지식재산권연구센터,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있어서 지재권관리의 현황분석 및 전략, 한국산업기술재단, 2005.11.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지재권소유의 Global Standard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05.8.
- 김선정, “국가연구개발사업자금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특허청, 2007.12
- 윤종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 재단, 이슈페이퍼08-01, 2008.1.
- 특허청,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2006.12.7.
- 과학기술부, 2007 과학기술연감, 2008.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년판 산업기술백서, 2007.12.
- 東京大學 産學連携本部, 國際的な産學官進める上で 問題となる 米國と日本の特許制度における相異点(米國バイ・ドール法の留意点を含む)に關する 調査研究, 2007.3.
- 佐藤一雄, 米國獨占法, -判例理論·經濟理論·日米比較-, 信山社, 2005.12.
- 辰巳直彦 등 4인공저, 知的財産權Ⅲ, 研究開發·ライセンス, 三省堂, 1996.8.
- 中島憲三, 共同研究·開發の契約と實務, 民事法研究會, 2006.11.
- Brian G. Brunsvold, Dennis P. O'Reilley, Drafting Patent License Agreements, BNA Books, 2004.
- Michael J.Lennon, Technology Transfer Guide, Aspen Law&Business, 2001.
- Michael A. Epstein, Frank L. Politano, Drafting License Agreements, Aspen Publishers, 2006.

# 부 록

〈미국 주요 대학의 지적재산정책〉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MIT	Stanford	UCLA Berkeley
기업 단독 소유	특허권의 귀속 (Title to Inven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 독자적으로, 대학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한 발명은 기업에 귀속</li> <li>○본 계약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종업원이 한 발명은 기업에 귀속</li> <li>○기업에 귀속한 경우 기업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실시허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만에 의해, 대학지원 없이, 대학교수·포닥·학생 등과 공동으로 하지 않은 발명은 기업에 귀속하며, 기업정책에 따라 처리</li> <li>○연구취지에 비추어 기업은 반드시 대학의 내부연구와 교육활동에 대하여 무상의 비독점, 비상업목적의 실시권을 인정</li> </ul>
공유	특허권의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T(교직원, 학생)와 기업(종업원) 공동으로 한 발명, 기업종업원이 독자로 했지만 MIT의 resources를 상당정도 사용해서 한 발명은 양자 공유</li> <li>○MIT는 공동명의로 특허 출원을 최초로 할 권리 가짐</li> <li>○출원비용, 유지비용은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균등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원, 학생과 기업의 종업원쌍방이 적어도 1명 이상 참가하여 획득한 발명은 공유</li> <li>○공유특허는 공유명의로 출원하며, 양자 공동으로 control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과 대학교수, 포닥, 학생 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은 공유</li> <li>○일방당사자가 출원비용을 등분으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자기부담으로 출원·유지를 하며, 공유명 의와 관계없이 완전하게 통제가능</li> </ul>
	실시 (Licensing Op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는 자유</li> <li>다만, 기업이 독점적 실시 희망시 11.2B의 라이선스옵션의 경우에 준하여 대학의 관리분 에 독점적실시의 라이선스를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의 경우, 제3자에게 상호 자유롭게 라이선스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한 발명은 기업도 대학도 자유롭게 실시가능, 제3자 라이선스도 가능</li> </ul>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MIT	Stanford	UCLA Berkeley
대학 단독 소유	특허권의 귀속 등 (Title to Inven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원 및/또는 학생 단독의 연구성과인 발명은 대학귀속</li> <li>○발명은 기업측에 통지</li> <li>○대학은 독자판단으로 특허출원가능/또는 기업요청에 의한 기업비용부담으로 특허출원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원, 학생 등에 의한 지재권은 대학에 귀속</li> <li>※권리를 모두 대학에 양도한다고 규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수, 포닥, 학생등만에 의한발명은 대학귀속 및 대학정책에 따라 처리</li> </ul>
	실시 (Licensing Op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출원발명을 기업에 내부연구목적을 위한 비독점,양도불가,무상실시권부여</li> <li>○기업은 특허완료통지수리후 6개월이내에 아래 라이선스옵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li> <li>①비독점실시,양도불가, 무상, 전세계대상의 서브라이선스 불가의 실시권. 기업은 합리적인 사업화노력을 하며, 미국 및 실시권부여받은 모든 국가의 출원·유지비용 등 부담</li> <li>②독점실시권, 기간한정, 유상, 서브라이선스가 가능.미국 및 실시권부여받은 모든 국가의 출원·유지비용 등 부담. 실시제품의 실질적인 미국내 제조. 조건은 옵션선택 후 3개월이내 별도 교섭 →실시희망국을 대학에 통지,출원·유지비용 등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에 귀속한 경우, 대학은 자유롭게 제3자실시허락 가능</li> <li>○국가 자금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발명은 권리양도, 라이선스에 대하여 35USC200에 따름 (바이돌 조항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연구취지에 비추어 대학은 기업의 내부적 실시에 대한 무상의 비독점·비상업목적의 실시를 인정함</li> </ul>

**<2006년도 발간목록>**

◎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06-01	기업 R&D의 양극화 현황진단과 정책과제	문혜선 (kistep)
2006-02	미국의 이공계 대학 교육 혁신정책 추이와 시사점	김기완 (kistep, 現 KDI)
2006-03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제언	오동훈 (kistep)
2006-0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관리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윤권순 (지식재산연구원)
2006-05	韓·美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시사점	백철우, 손병호 (kistep)
2006-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 탐색 : FTTH 기술개발 사례 분석	이병현 (광운대)
2006-07	통신·방송 융합 관련 주요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 시사점	김윤중, 정상기 (kistep)
2006-08	기초연구 결과물의 활용과정 분석 및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제언	양혜영 (kistep)
2006-09	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유경만 (kistep, 現 기초연)
2006-10	자립적 지방화를 향한 지역혁신사업 추진 전략	한주연 (kistep)
2006-1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산학협력 선순환구조 구축을 중심으로 -	송완흠 (포항공대)
2006-12	SBIC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고찰한 기술금융 정책의 이슈와 시사점	장용석 (조지 워싱턴대학)

<2007년도 발간목록>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07-01	한국형 기술영향평가의 기본방향 정립 및 정책활용도 제고	임현, 유지연 (kistep)
2007-02	‘제3세대’ 혁신정책 패러다임의 등장과 정책과제	이장재, 오해영 (kistep)
2007-03	자체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개선방안	박지현, 정상기 (kistep)
2007-04	이공계 박사의 노동시장 특성과 유동성 분석	김진용 (kistep)
2007-05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이춘주 (국방대학원)
2007-06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분석 및 시사점	박수동 (kistep)
2007-07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폴 연계 전략	윤성준(kistep), 길창민(IITA)
2007-08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효과성 제고방안	이윤빈 (kistep)
2007-09	와해성 기술혁신의 현황진단 및 정책적 지원방안	채재우(한국기계연구원) 이길우(kistep)
2007-10	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차두원(kistep), 김현철(한국과학재단) 손병호(kistep)
2007-1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고윤미, 김병태 (kistep)
2007-12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개선방안	임현, 안병민 (kistep)
2007-13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한 기술유동화 도입방안 - 기술신탁을 중심으로 -	이승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14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통계의 비교와 시사점	박선영(kistep) 조성표(경북대)
2007-15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 분석	김진용, 이정재 (kistep)

## &lt;2008년도 발간목록&gt;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08-01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과제	이장재, 이정재 (kistep)
2008-02	융합기술 연구개발조직의 발전방안 - 한·미·일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자  
소개

■ 최 치 호

-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개발실장
- 송실대학교 법학박사('97)
- Tel) 02-958-6052
- e-mail) chchoi@kist.re.kr

## kistep Issue Paper 2008-03

---

| 발 행 | 2008년 5월

| 발행인 | 조 영 화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589-2200 / 팩스 : 02) 589-2222

<http://www.kistep.re.kr>

| 인쇄처 | 드림디앤디 [TEL : 02)2268-6940 / FAX : 02)2268-6941]